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홀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1. 12. 7.(화) 10:00

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
[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]



**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**

#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48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1. 10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2022년도 통합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(안)

기 금 명	2021년도말 조성액 ㉠	2022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2년도말 조성액 ㉡=㉠+㉢-㉣	증 감 ㉢=㉡-㉠
		수입㉢	지출㉣		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7,303,140	269,928	0	17,573,068	269,928

## 4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기금개요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연도 내 효율적인 재원 활용과 각종 회계,기금의 통합적 관리 추진을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근거로 2021년에 설치되었음
- 재원조성
  - 지방세 증가율이 전년대비 20%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  - 결산 시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%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  -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- 지원기준
  -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
  -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
  -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
  -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

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
- 지원대상
  -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

## 나. 검토결과

- 본 계획안은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체하였으며 결산 금액 확정 후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해당금액 적립 및 세수여건 악화시 일반회계로 전출 활용하기 위함으로 금천구의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예상됨
- 다만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할 경우 철저한 사용계획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임

붙 임 : 1.관계법령 1부.

# 관계법령

## 1)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0. 6. 9.]